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의사결정권 강화 〉
■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23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1. 일상적 운용지시 제외대상의 명확화	3
2.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집합투자업자 변경 포함	11
3.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등의 변경요건 신설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9.
3. 회 부 일 : 2026. 1.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

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Ⅲ. 검토의견

1. 일상적 운용지시 제외대상의 명확화

□ 개정안은 투자자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변경, 주요 투자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제시 등 투자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④ (생략)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 이 경우 투자자들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절차 진행, 투자자들의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의 변경 절차 진행, 주요 투자자산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투자자들의 의견 제시 등 투자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기금(fund)을 조성한 뒤에 이 기금을 투자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운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임.¹⁾

□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구조적 형태에 따라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조합형(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²⁾

○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 등의 당사자로 구성되는데,

-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후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지시함.³⁾

1) 이상복, 『자본시장법』, 2021., p.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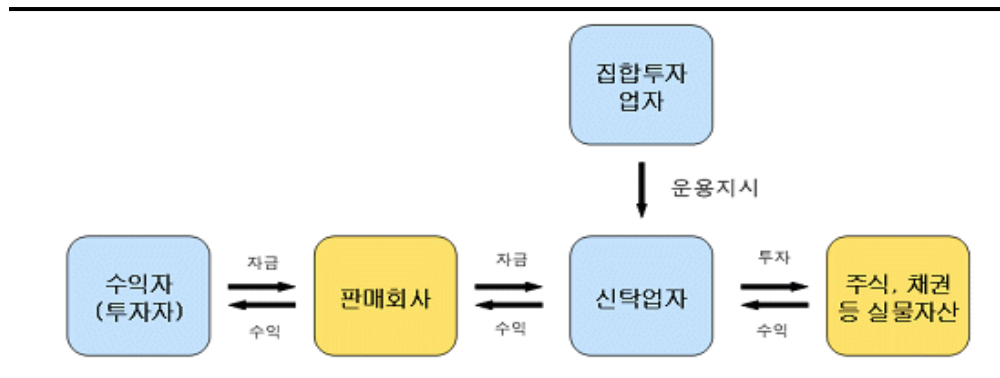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⑩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림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됨.
- 투자회사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되어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음.⁴⁾
-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담당⁵⁾하고,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회사의 자산을 보관·관리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함.⁶⁾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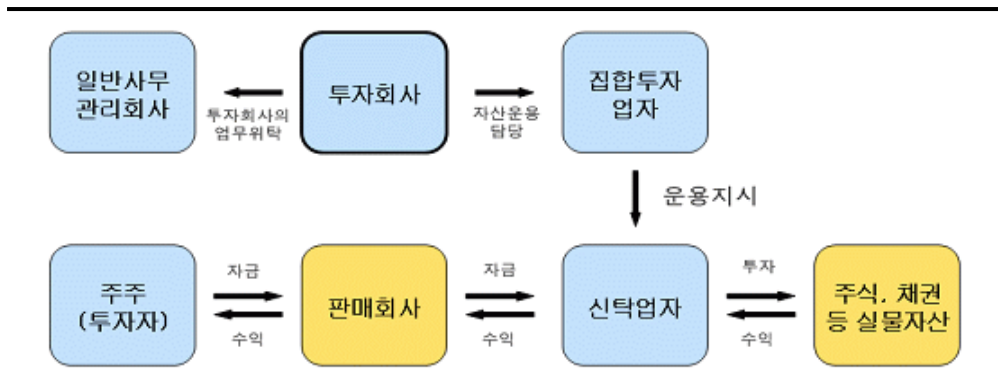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그림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상의 조합형태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 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⁷⁾,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됨.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⁹⁾

○ 현행법¹⁰⁾ 및 시행령¹¹⁾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할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관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일상적인 운용지시’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의견 제시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의 변경, 주요 투자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제시 등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의견 제시행위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투자자의 운용권을 배제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본질적인 특성, 투자자의 권리행사 및 의견 제시와 운용지시 간의 경계의 모호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보임.

○ 집합투자는 투자자의 운용권을 배제하므로, 현행법령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운용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¹²⁾

○ 비록 개정안은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 행위”에 한하여 일상적 운용지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① 권리행사 및 의견 제시와 운용지시 간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 ② 현실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의견을 단순한 참고사항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③ 이에 따라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① 투자자의 권리행사 및 의견 제시를 일상적인 운용지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집합투자”의 본질에 반하며 투자자 보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현재에도 일상적인 운용지시 해당 여부는 규제 취지,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총회(공모펀드)¹³⁾ 또는 집합투자규약(일반 사모펀드)에 따른 절차 등을

12)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2., pp.1176~1177.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변경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⁴⁾

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은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14) 금융투자협회도 개정안에 대하여 집합투자의 개념과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수익자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집합투자업자 변경 포함

☐ 개정안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생략)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형 또는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등¹⁵⁾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1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익명조합원총회 등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반면,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¹⁷⁾을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한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은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바, 개정안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회사형 또는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시행령¹⁸⁾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등의 변경요건 신설

□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되, 그 결의는 발행주식총수,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8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 ----- ----- ----- ----- ----- ----- ----- ----- -----제188조제2항·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제195조

현행	개정안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 ----- ----- ----- ----- ----- ----- ----- -----.
<신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2.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3.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또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현행	개정안
② ~ ⑨ (생략)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 ⑤ (생략)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 제3항·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⑦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1의2. (생략)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결의한다. 4. 투자합자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5.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익명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249조의8제3항제5호----- ----- ----- ⑦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 1.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제249조의8제4항-----

현행	개정안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 64. (생략)	----- -- 41의4. ~ 64.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시 수익

자총회 등¹⁹⁾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²⁰⁾하고 있으나, 일반 사모펀드에

1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익명조합원총회 등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은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

대해서는 수익자총회에 대응되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²¹⁾

□ 이와 같이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교체 과정에서 집합투자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에 따라, 다수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운용주체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

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모펀드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므로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다수의 소액 수익자 보호 필요성이 크고, 다수 수익자의 의사 합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큰 만큼 공적 규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큰 반면,
-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의 적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²²⁾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을 위한 절차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운용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됨.²³⁾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투자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강화할 수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⑩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3)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상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교체 등 중요사항은 총회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신속하게 각 투자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집합투자기구 규약에 따라 일정 비율(전원, 2/3, 과반수 등)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되고 있음.

있는 반면, 일반 사모펀드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하여 집합투자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맞춤형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적합하다는 점,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대한 요건(구체적인 찬성비율 등) 등을 법령으로 규율하는 해외 주요국(미국, EU 등)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이 일반 사모펀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요건을 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일괄 적용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²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1

24) 예를 들어, 펀드의 만기는 해당 시점에 투자를 종료하기로 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높은 투자자가 만기 연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 매각을 포함한 펀드의 운용전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만기에 맞춰 투자 회수를 기대하는 다른 투자자는 투자 회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